

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6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9. 8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9. 9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9. 17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장학금의 목적규정 일부 변경(안 제1조)
- 불합리한 부분의 정비(안 제3조, 제5조 및 제6조)
- 장학금의 지급정지 항목 일부 삭제(안 제9조)
-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조성하는 항목 삭제(안 제11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,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 성금을 폐지한 이유는
- 답 : 기부금품 모집에 위배되므로 폐지하였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1999. 9.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

- 안 제3번 항목의 거류면 송산리 34필지 16,655m²를 고성읍 송학리로 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경계기준 구거(하천)를 적용하지 않는 부분으로 사료되며,
- 또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, 여론청취를 위한 토론회(회의), 설명회 등 구체적인 여론 청취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, 포괄적인 여론만 명시되어 있어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주민의 의견청취는 어떤 방안으로 하였는지
- 답 : 의견청취는 토지소유자와 읍면장에게 종합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음.

6. 토 론

- 지역 의회의원 조차 전혀 모르는 사실인바 향후 해당지역 의회의원, 토지 소유자, 농지위원, 읍면장의 참여하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의견제시기로 합의하였음.

7. 심사결과

- 1999. 9.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불임과 같은 의견을 회시기로 의결

※ 고성군의회건의서 : 불임 참조